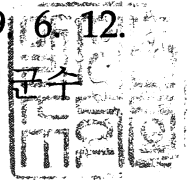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105
----------	------

제출일자 : 2019. 6. 12.

제출자 : 달성군수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신청사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에 유치를 위한 활동 및
그 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신청사를 성공적
으로 유치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책무) 신청사 유치에 필요한 시책 발굴
- 나. (위원회)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다. (예산확보 및 지원) 신청사 유치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 노력

4. 참고사항

가. 기타사항

- (1)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4)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9. 6. 3.(월) ~ 2019. 6. 7.(금)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신청사 달성군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사”라 함은 대구광역시의 본청, 시의회, 산하기관 및 관계 기관 등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에 따라 새로 건립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후보지”라 함은 대구광역시에 신청사 부지로 우리 군이 제안하는 지역을 말한다.
3. “평가대상지”라 함은 대구광역시에 신청사 부지로 우리 군이 제안한 후보지 중 신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을 말한다.
4. “예정지”라 함은 평가대상지 중 이 대구광역시 조례에서 정한 평가기준과 방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2장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계획

제3조(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계획의 수립) 달성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후보지 선정에 관한 계획
2. 건립규모 제안
3. 건립 비용 추정
4.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전문기관의 용역)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달성군 유치위원회는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필요한 용역을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신청사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용역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장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달성군 유치위원회

제5조(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달성군 유치위원회의 설치)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유치 및 지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달성군 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유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신청사 건립 유치 전·중·후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4. 신청사 건립 후보지, 평가대상지, 예정지에 대한 토지매입, 활용방안 등에 관한 사항
5. 신청사 건립 후보지, 평가대상지, 예정지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방지 및 향후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6. 유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심의를 거치도록 요구한 사항

제7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유치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협의하여 지명한다.

③ 유치위원회의 위원은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예정지 확정시까지로 하고, 필요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과 연계하여 따로 정 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觸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7조에 따른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하였을 경우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유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전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유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유치위원회를 대표하고, 유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유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군수의 요구로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유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간사) 유치위원회에 유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제13조(분과위원회 등) ① 유치위원회는 위원들의 경험과 학식을 바탕으로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을 둔다.

② 유치위원회는 신청사 건립 유치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유치위원회 위원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30명 내외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4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유치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유치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의견청취 및 여론수렴) 유치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6조(비밀누설 금지) ① 유치위원회의 위원·전문연구단의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또는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처리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 해촉을 요구하고, 필요시 형사고발 등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확보 및 지원) ① 군수는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을 하기 위하여 용역비, 홍보비 등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사 건립 달성군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건립 부지를 매입하여 대구광역시에 무상 제공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유치위원회 및 그 위원이 유치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유치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유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해진 후보지 선정, 유치위원회 구성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